

고 시

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·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·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4. 9.

문 화 재 청 장

- 고 시 명 : 국가무형문화재 ‘완초장’ 명예보유자 인정
- 고시내용

문화재명	구분	성명	기·예능	주소
완초장 (莞草匠)	명예보유자 인정	양인숙 (梁仁淑)	완초장	인천광역시 강화군

- 인 정 일 : 관보 고시일

- 인정사유 : 국가무형문화재 완초장 전승교육사 양인숙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,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져 명예보유자로 인정함